

붙임 1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설치 및 인력 신고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183(2019.8.22.)관련

□ 환자지원팀 설치 신고

-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③ **신규신고** > **신규병동**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특수**」 선택
 - 적용일자: 환자지원팀을 시작하는 날짜(**2019-11-01**부터 등록가능)
 - 병동코드: 「**환자지원팀**」 선택

● 시설현황			
* 병동구분	✓ 특수	* 적용일자	✓ 2019-11-01
* 병동코드	✓ 환자지원팀	* 병동명	✓ 환자지원팀
정신과병동유형			
* Unit코드	✓ 001	* Unit명	✓ 환자지원팀
* 운영병상수	✓		

임시저장 취소

- ④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 인력 신고

○ 의사

-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②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 ③ **신규신고** > 인력현황변경을 하거나 **신규입사** 버튼 클릭
- ④ 의료인력정보변경 팝업 창에서 근무병동 선택
- ⑤ **병동추가** 버튼 클릭후 「**환자지원팀**」 선택
- ⑥ 병동시작일자 입력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 ⑦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등록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구분	병동	UNIT	전담구분	팀 전담여부	시작일자	종
신규	280 환자지원팀	001 환자지원팀		N	2019-11-01	999-

○ 사회복지사

- ①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료기사 신고 선택
※ 의사인력신고와 동일

근무병동	변경전	변경후
병동코드	003	280
병동명	외래	환자지원팀
단위코드	001	001
단위명	외래	환자지원팀
적용일자	2012-01-24 ~ 2013-06-30	2019-11-01 ~ 9999-12-31
전담여부	N	N

○ 간호사

- ①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선택
② 의료인력정보변경 팝업 창에서 기본정보 선택
- 직종: 정규직(전일제 주40시간) or 계약직(전일제 주40시간) 선택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적용 가능(중복가능)
중복시 간호등급 적용여부 '적용' 체크
※ 그 외 신고방법 의사인력신고와 동일

□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수료증 등록방법

○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공통)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의사: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간호사: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간호인력 신고 선택

사회복지사: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의료기사 등 신고 선택

③ 신규신고 버튼 클릭 > 인력현황 “변경”을 선택하거나 신규입사 버튼 클릭

④ 의료인력정보변경 창에서 “자격등록 탭-환자지원교육이수” 교육

추가 및 입력 후 임시저장

< 교육등록 화면 예시 (공통) >

교육이수종별	교육이수번호	교육이수일자	적용시작일자	적용종료일자
환자지원교육이수	2022-01-01-00001	2022-09-01	2022-09-01	2023-08-31
환자지원교육이수	2020-01-01-00001	2020-09-01	2020-09-01	2021-08-31

< 입력방법 >

- 교육이수번호: 교육수료증의 발급번호 입력
- 교육이수일자: 교육수료증의 수료일자 입력
- 적용시작일자: 유효기간 시작일 입력(교육이수일자 입력시 자동 입력됨)
☞ 기 등록된 교육과 날짜가 겹칠 경우, 교육이수일자는 그대로 입력하되, 적용시작일자는 기존 교육의 적용종료일자에 이어서 입력 요망
- 적용종료일자: 유효기간 종료일 입력(교육이수일자 입력시 자동입력됨)

⑤ 「최종제출」 화면에서 파일첨부에 수료증을 첨부 한 후, 작성자 정보 등록 및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작성자 정보등록
+ 신고자 홍길동 + 전화번호 010-1234-5678 e-mail @선택

※ 최종제출 시 수료증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도 Q&A

Q1.	환자지원팀 설치 후 인력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A1.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서 환자지원팀 설치신고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리 완료 되어야 인력신고 가능합니다. 환자지원팀 설치신고 2~3시간 후 재시도하거나 ☎1644-2000(심평원 콜센터)으로 처리 결과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나요?
A2.	상근하는 사회복지사가 원내 치료과정 참여 등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환자지원팀 업무를 겸직 가능하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산정 대상 인력에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Q3.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나요?
A3.	중복 가능합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방문업무는 불가능합니다.
Q4.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신청 및 수강은 어떻게 하나요?
A4.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이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지원팀 설치 및 인력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② 사이버 연수원 사이트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매월1~20일(http://www.pt-support.kr) ③ 환자지원팀 소속 여부 확인 및 승인... 매월21일~31일(공단) ④ 승인이 되면 수강신청 다음달 1일부터 사이버 연수원 사이트에서 수강 가능 하며, 교육비용은 없습니다. ※ 교육 수강 시점(매월 1일) 기준으로 환자지원팀 소속이어야 수강 가능합니다. 예) 환자지원팀 적용시작일이 7.1인 인력이 6차수 수강신청 ⇒ 수강시작일 6.1기준 환자지원팀 소속이 아니므로 미승인
Q5.	수강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5.	수강신청기간(매월 1~20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종료 이후 수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달 수강신청기간(1~20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6.	미승인 예정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①소속 요양병원의 환자지원팀 설치신고 여부, ②수강신청자의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으로 신고 여부 및 ③수강시작일 기준 환자지원팀 소속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지원팀 설치 및 인력 신고 후, 공단으로 정보 연계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매월 25일까지는 신고가 완료되어야 승인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 등으로 미승인된 경우, 조건 완비 후 다음 달에 다시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Q7.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이수 후에 환자지원팀 설치해야하나요?
A7.	아닙니다. 기본교육은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대상 교육이므로, 환자지원팀 설치 및 인력으로 신고한 이후에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지원팀 역할을 수행하는 기타 인력도 수강은 가능합니다.
Q8.	교육을 수료했는데, 이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재이수 해야 하나요?
A8.	공단에서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이수 안내문을 전국 요양병원에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 안내와 유효기간 연장 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참고 차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u>유효기간 종료 전에만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u> ※유효기간: 수료일로부터 만 1년 (예시: 2021.5.3. 수료자의 유효기간은 2021.5.3.~2022.5.2. → 2022.5.2. 이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유효기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
Q9.	요양병원 퇴원환자 기본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나요?
A9.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수가코드 AW001~AW004)' 산정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중 1인 이상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2019.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수강신청을 했는데 계속 승인대기 상태입니다.
A10.	공단에서는 수강신청자의 환자지원팀 소속여부를 수강신청종료 다음날부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합니다. 최종 승인은 매월 말일(평일 기준)에 이루어지고, 최종 승인 이후 수강상태가 승인대기→수강대기(또는 미승인)로 변경됩니다.
Q11.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선택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교육 이수되지 않은 건가요?
A11.	필수과정은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과정 중 꼭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시간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수강 후 이수하셔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 가능합니다. 선택과정(필수X)의 경우 필수과정 수료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수강신청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선택적으로 수강 할 수 있습니다.